규 칙

합천군의회 규칙 제36호

제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4월 24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합천군의회 규칙 제36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중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4시간 이내에 예결위원회에 동의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8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략)	제68조(예산안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의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24시간 이내에 예결위원회에 동의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문은 제1항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	

하여야 한다.	
⑤ 질문자 수는 회기 운영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